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탐원 유슬기[6593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485호

시행일자 2024. 4. 1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 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2호 (2024. 4. 15.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3호 (2024. 4. 15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 및 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’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별표1의 제938호부터 제939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

938.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기술

939.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

- 별표2의 제18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

18. 자기공명/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

바.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: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정병하⇒ 구교철 변경

- 별표3의 제23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

23.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

□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 붙임과 같이 변경

23.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(동종초자연골)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

마.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일부 삭제 및 신설

첨부

1) 신의료기술의+안전성·유효성+평가결과고시+전문

2) 신의료기술의+안전성+유효성+평가결과+고시+일부개정안

3) 평가+유예+신의료기술+고시+전문

4) 평가+유예+신의료기술+고시+일부개정안. 끝.

(대의협 제811-485호)

(시행일자:2024. 4. 15.)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 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
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